

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
(강남생활문화축제)

심사보고서

2024. 11. 27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456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1. 04. 강남구청장(문화도시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11. 27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가. 제안이유

-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‘강남생활문화축제’와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미리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강남생활문화축제
-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필요성 : 지역기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축제를 발굴하고, 지역예술인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
- 소요예산 : 210,918,000원(출연금 158,418천원, 이월금 52,500천원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세부 자료 : 동의안 별첨 자료 참고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- 본 건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“강남생활문화축제”와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강남구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의안 제출 배경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강남생활문화축제는 강남생활문화축제를 통하여 강남의 생활문화를 널리 알리고 강남의 대표축제로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사업임.
- 동의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억 1,091만 8천원 중 출연금 편성액은 1억 5,841만 8천원이고, 5,250만원은 재단 이월금으로 편성함.
 - 그런데 본 사업은 2024년 출연금 미편성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재단 이월금 1억 5,123만 8천원으로 추진하였는바, 전년 대비 예산이 5,968만원, 39.5% 증가한 사유를 비롯하여 2025년에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배경과 출연금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- 본 사업은 시민축제기획자의 발굴·양성, 시민축제기획자의 기획 행사 개최, 공연동호회 경연대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역주민이나 관

런 단체 등의 참여를 기반으로 축제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임. 다만, 2025년 예산안 신규사업 중 문화도시과의 “주민주도 특화 축제 지원”의 사업 내용이 동별로 지역주민이 축제 기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대상 등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예산안 심의 시 유사·중복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(강남생활문화축제). 끝.

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(강남생활문화축제)

의안 번호	4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4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: 문화도시과

1. 제안이유

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‘강남생활문화축제’와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미리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강남생활문화축제

나.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다. 필요성 : 지역기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축제를 발굴하고, 지역예술인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 필요

라. 소요예산 : 210,918,000원(출연금 158,418천원, 이월금 52,500천원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○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세부 자료 : 별첨

‘강남생활문화축제’ 운영 계획

강남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강남의 생활문화를 널리 알리고 강남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강남생활문화축제
- 사업기간 : 2025년 9월 (연 1회)
- 총사업비 : 금210,918천원(출연금: 158,418천원, 이월금: 52,500천원)
- 참가대상 : 강남구민 포함 관내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 등
- 장 소 : 관내 다인원 수용 가능 공간
- 사업내용
 - 축제기획자 양성과정을 통해 발굴한 시민축제기획자의 기획 행사 개최
 - 공연동호회 경연대회
 - 전시·체험 생활문화단체 전시 또는 체험 프로그램
 - 관객과 함께하는 떼춤페스티벌
- 추진계획
 - 2025년 1월 : 기본 사업계획 수립
 - 2025년 3월~6월 : 축제기획자 양성과정 진행
 - 2025년 4월~10월 : 축제 기획 및 운영

□ 추진효과

- 축제기획자 발굴을 통해 강남문화재단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
- 축제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	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			
계		210,918	151,238	59,680	39.5%
[인건비(101)]		10,800	10,800	0	0.0%
[기간제근로자등보수(04)]	[기간제근로자등보수(04)]	10,800	10,800	0	0.0%
1. 시민축제기획자 600,000원×6명×3월 = 10,800,000원	1. 축제기획자 600,000원×6명×3월 = 10,800,000원				
[일반운영비(200)]		196,100	135,420	60,680	44.8%
[사무관리비(01)]		3,800	3,200	600	18.8%
[01-2. 위원회등운영수당]	[01-2. 위원회등운영수당]				
가. 축제기획자 심사비 150,000원×3명×2회=900,000원	가. 축제기획자 심사비 150,000원×3명×2회=900,000원				
나. 2시간초과 심사수당 50,000원×3명×2회=300,000원	나. 2시간초과 심사수당 50,000원×3명×2회=300,000원				
다. 경연대회 심사비 150,000원×3명×2회=900,000원	다. 경연대회 심사비 150,000원×5명×2회=1,500,000원				
라. 2시간초과 심사수당 50,000원×3명×2회=300,000원	라. 2시간초과 심사수당 50,000원×5명×2회=500,000원				
마. 축제운영대행 입찰 심사비 150,000원×7명×1회=1,050,000원					
바. 2시간초과 심사수당 50,000원×7명×1회=350,000원					
[공공운영비(02)]		1,000	1,000	0	0.0%
[02-1. 공공요금 및 제세]	[02-1. 공공요금 및 제세]				
가. 행사보험료 1,000,000원×1회=1,000,000원	가. 행사보험료 1,000,000원×1회=1,000,000원				
[행사운영비(03)]		191,300	131,220	60,080	45.8%
[1. 홍보비]	[1. 홍보비]				
가. 기획자 양성과정	가. 기획자 양성과정				
1) 옥외홍보물 디자인/제작 3,000,000원×1식×1회=3,000,000원	1) 옥외홍보물 디자인/제작 200,000원×1식×1회=200,000원				
2) 포스터등 홍보물 디자인/제작 3,000,000원×1식×1회=3,000,000원	2) 포스터등 홍보물 디자인/제작 2,000,000원×1식×1회=2,000,000원				
나. 생활문화축제 참여단체 모집	나. 생활문화축제 참여단체 모집				
1) 옥외홍보물 디자인/제작 3,000,000원×1식×1회=3,000,000원	1) 옥외홍보물 디자인/제작 200,000원×1식×1회=200,000원				
2) 포스터등 홍보물 디자인/제작 3,000,000원×1식×1회=3,000,000원	2) 포스터등 홍보물 디자인/제작 2,000,000원×1식×1회=2,000,000원				
	다. 생활문화축제 홍보				
	1) 옥외홍보물 디자인/제작 200,000원×1식×1회=200,000원				
	2) 포스터등 홍보물 디자인/제작 2,000,000원×1식×1회=2,000,000원				

편성목별		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			
2. 행사 진행비 가. 축제운영대행(시스템운영, 경연대회진행, 안전관리 등) 170,000,000원×1회=170,000,000원 나. 축제기획자 양성과정 강사비 390,000원×2명×10회=7,800,000원 다. 축제기획자 양성과정 행사진행비 150,000원×10회=1,500,000원	2. 행사 진행비 가. 축제운영대행(시스템운영, 경연대회진행, 안전관리 등) 100,000,000원×1회=100,000,000원 나. 공연팀 출연료 20,000,000원×1회=20,000,000원 다. 축제기획자 양성과정 강사비 360,000원×1명×7회=2,520,000원 라. 축제기획자 양성과정 행사진행비 300,000원×7회=2,100,000원				
[업무추진비(203)]	[업무추진비(203)]	1,000	2,000	△1,000	△50.0%
[사업업무추진비(07)] 1. 사업업무추진비 100,000원×10회=1,000,000원	[사업업무추진비(07)] 1. 사업업무추진비 200,000원×10회=2,000,000원	1,000	2,000	△1,000	△50.0%
[일반보상금(301)]	[일반보상금(301)]	3,000	3,000	0	0.0%
[행사실비 보상금(01)] 1. 떼춤축제 참가자 500,000원×6팀×1회=3,000,000원	[행사실비 보상금(01)] 1. 떼춤축제 참가자 500,000원×6팀×1회=3,000,000원	3,000	3,000	0	0.0%
[연금부담금 등(304)]	[연금부담금 등(304)]	18	18	0	0.0%
[연금부담금(01)] 1. 예술인고용보험료 가. 예술인고용보험료 (떼춤축제 참가자) 3,000,000원×75%×0.8%=18,000원	[연금부담금(01)] 1. 예술인고용보험료 가. 예술인고용보험료 (떼춤축제 참가자) 3,000,000원×75%×0.8%=18,000원	18	18	0	0.0%

작성자 : 문화도시과 문화예술팀 행정8급 김민영(☎ 02-3423-5935)